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2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김정호·허종식·최기상

김동아 • 이연희 • 이훈기

강득구·박 정·박해철

전진숙 • 박희승 • 장종태

오세희 • 유후덕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,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. 이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· 검안

서·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"환자(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)"를 "환자[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바수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]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7조(진단서 등) ① 의료업에	제17조(진단서 등) ①			
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				
안(檢案)한 의사[이하 이 항에				
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(檢				
屍)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				
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],				
치과의사, 한의사가 아니면 진				
단서 • 검안서 • 증명서를 작성				
하여 환자(환자가 사망하거나	환자[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			
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	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			
속·비속, 배우자 또는 배우자	비속,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			
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	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			
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	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배우자			
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· 비속,	의 직계존속을 말하며, 환자가			
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			
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	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			
<u>매를 말한다)</u> 또는 「형사소송	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		
법」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	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			
시(檢屍)를 하는 지방검찰청검	<u>매를 말한다]</u>			
사(검안서에 한한다)에게 교부				
하지 못한다. 다만, 진료 중이				
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				
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				

다시	진료	하지	아니	하더	라	도
진단서	나 증	명서	를 내	줄 4	Š	있
으며,	환자 .	또는	사망기	<b>가를</b>	직	접
진찰히	거나	검안	한 의	사 •	치	과
의사	또는	한의/	사가	부득	0	한
사유로	. 진	단서 •	검안	서	또	는
증명서	를 내	줄 수	- 없으	2면	같	은
의료기	관에	종사	하는	다른	-	의
사・치	과의/	나 또	느	한의	사	가
환자의	진료	문기록	부 등	-에	따	라
내줄 -	수 있다	<b>斗</b> .				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